

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9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7월 24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우중호

1. 수정이유

- 복지회관 사용료중 이발료의 요액이 과다하게 인상되 있어 농촌지역 복지향상 차원에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, 사용료를 별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복지회관 사용료 별표에 대하여 “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다”는 단서 조항을 신설 (안 제6조제1항)
- 복지회관 사용료중 이용실 요액을 “학생 5,000원, 일반 8,000원”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“학생 4,000원, 일반 7,000원”으로 수정 (안 별표)

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다.

안 별표중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
3. 이용실		
○ 학 생	1 회	4,000 원
○ 일 반	1 회	7,000 원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		개 정 안			수 정 안		
제6조(사용료)①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에 의한다.			제6조(사용료)① ----- ----- ----- ----- (단서 신설)			제6조(사용료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다.		
별표 복지회관사용료			별표 복지회관사용료			별표 복지회관사용료		
구 분	기준	요 액	구 분	기준	요 액	구 분	기준	요 액
1.독서실 ○ 독서실사용료	1회	1,000원	1.독서실 ○ 독서실사용료	1회	(현행과 같음)	1.독서실 ○ 독서실사용료	1회	(개정안과 같음)
2. 목욕탕 ○ 소 인 ○ 대 인	1회 1회	600원 1,200원	2. 목욕탕 ○ 소 인 ○ 대 인	1회 1회	1,800원 2,500원	2. 목욕탕 ○ 소 인 ○ 대 인	1회 1회	(개정안과 같음)
3. 이용실 ○ 학 생 ○ 일 반	1회 1회	3,000원 4,000원	3. 이용실 ○ 학 생 ○ 일 반	1회 1회	5,000원 8,000원	3. 이용실 ○ 학 생 ○ 일 반	1회 1회	4,000원 7,000원
4. 미용실 ○ 드라이 ○ 컷 트 ○ 파 마	1회 1회 1회	3,000원 3,000원 12,000원	4. 미용실 ○ 드라이 ○ 컷 트 ○ 파 마	1회 1회 1회	7,000원 7,000원 15,000원	4. 미용실 ○ 드라이 ○ 컷 트 ○ 파 마	1회 1회 1회	(개정안과 같음)
5. 다중집회장소 ○ 냉난방사용료	시간	10,000원 +(시간× 연료시간)	5. 다중집회장소 ○ 냉난방사용료	시간	30,000원 +(시간× 연료시간)	5. 다중집회장소 ○ 냉난방사용료	시간	(개정안과 같음)